



<공공> 사외이사-2

(2) 공공기관 당연직 사외이사 문제점과 개선과제

김영훈 경제실장·이수영 경제팀장

1. 기관출신 사외이사

- 교육부(122명), 산업통상자원부(100명), 미래창조과학부(88명) 순으로 기관출신 사외이사가 현재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관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공공기관에 기관출신 사외이사를 보유한 정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36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26개 기관), 미래창조과학부(24개 기관) 순임.

【표 1】 부처별 기관출신 사외이사 현황

부처명	출신 사외이사 수	기관 수(분포)
교육부	122명	21개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100명	36개 기관
미래창조과학부	88명	24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69명	26개 기관
보건복지부	67명	21개 기관

2. 당연직 사외이사¹⁾

- 사외이사가 있는 273개 공공기관 중 약 70%가 당연직이사를 선임하고 있음. 전체 공공기관의 사외이사 5명 중 1명은 당연직이사인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의 76.14%, 기타공공기관의 79.35%가 당연직 사외이사가 있음.

【표 2】 기관유형별 당연직 이사 현황

기관유형	전체 사외이사 기관 수	당연직이사 기관 수	비율
공기업	30개 기관	0개 기관	0%
준정부기관	88개 기관	67개 기관	76.14%
	(680명)	(145명)	(21.32%)
기타공공기관	155개 기관	123개 기관	79.35%
	(1445명)	(399명)	(27.61%)

1) 당연직이사는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만 존재.

기관유형	전체 사외이사 기관 수	당연직이사 기관 수	비율
총합계	273개 기관	190개 기관	69.6%
	(2313명)	(544명)	(23.52%)

- 당연직이사는 각 기관의 정관을 기준으로 선임됨. 당연직이사 중 92.83%는 정관상 현직 공직자가 선임되도록 규정. 공직자로서 당연직이사를 수행하는 505명 중 55.45%(280명)가 주무부처/소속기관 출신 당연직이사였음.

【표 3】 당연직 이사 분류

구분	당연직이사 수	비율
공직자	505명	92.83%
주무부처/소속기관	280명	
협회·단체인	30명	5.51%
기업인	5명	0.92%
전문가	3명	0.55%
기타	1명	0.18%
총합계	544명	100%

- 5곳 이상 공공기관의 당연직 이사가 되는 공직자는 현재 11명이며, 이들이 수행하는 당연직 이사직만 103개에 이룸. 현재 당연직 이사직 수가 544개 인 것을 감안하면, 11명의 공직자들이 전체 당연직 이사의 약 1/5을 수행하는 것

- 공직자 한사람이 맡게 되는 당연직 이사직 수(數)는 최대 28개(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에 달함.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19개, 교육부 대학정책관 16개, 기획재정부 제2차관 12개 순임.

【표 4】 5곳 이상 공공기관의 당연직이사가 된 공직자

공직명	수행기관 수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28개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19개
교육부 대학정책관	16개
기획재정부 제2차관	12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9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관	8개
교육부 차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6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5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복지부 차관	

3. 민간 당연직 사외이사

- 정관 상 당연직 이사 중 비(非)공직자 혹은 민간기관직을 당연직 이사로 임면하도록 한 기관은 총 24개
- 실제로 40여명의 비(非)공직자/민간기관직이 당연직 이사를 수행 중

【표 5】 비(非)공직자 및 민간기관직을 당연직 이사로 임면하도록 한 주요 기관

기관명	민간인 당연직 이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 소속 승려로서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국립생태원	서천군수가 추천하는 3인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천군수가 추천하는 1인
독립기념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4명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기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기초전력연구원	대한전기학회 회장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 한국선주협회장 2. 사단법인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장

4. 시사점

- 정부가 출자하거나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정부부처의 대표가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움. 문제는 최대 28개에 달하는 사외이사를 겸직함에 따라 사실상 사외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임. 정부와의 협업을 위해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에 임명되고 있지만 실제 이사회참석 실적은 매우 저조해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등으로 정부부처 출신이 이미 있는 경우,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됨.

- 일부 공공기관의 비(非)공직자 및 민간기관직 당연직 이사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움. 공공기관의 당연직 이사가 각 기관의 정관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당연직 이사의 선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